

정책논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 창 민

현재 특별자치도가 처한 상황은 양적인 권한이양보다는 제주의 실익을 위한 질적 권한이양이 필요한 시기이며, 핵심적 권한 및 제도의 이양을 위해서는 지원위원회가 현재보다 강력한 위상과 더불어 중앙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1. 서론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혁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방경영의 선도적 모델로서 야심차게 추진되었으나 최근 핵심권한의 미이양 및 추진체계의 약화 등으로 추진동력의 상실되어 그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은 제주지역 자치역량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와 중앙정부와의 직접적 소통 통로이자 추진체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기초를 담보하고 지속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특별자치도가 처한 상황은 양적인 권한이양보다는 제주의 실익을

위한 질적 권한이양이 필요한 시기이며, 핵심적 권한 및 제도의 이양을 위해서는 지원위원회가 현재보다 강력한 위상과 더불어 중앙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도입기를 지나 성장·정착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체계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기능 및 역할이 무엇인지 탐색하면서 적정 추진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실태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조정 기능은 새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무총리실 산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이 있다.

각각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JDC는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추진주체로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총리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운영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고(제주특별법 제7조), 지원위 사무처의 경우 지원위 보좌, 특별자치도 관련 제도개선, 운영상황 및 성과평가, 지원 및 조정업무 등을 수행한다(제주특별법 제8조).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각 부문별 제도개선 협의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¹⁾

1)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각 부처 장관 및 도지사)와 위촉직위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각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 들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간의 관계는 제주특별자치도/JDC와 지원위 사무처는 제도개선건의와 지원·평가의 관계를, 그리고 지원위 사무처와 중앙부처의 경우 상호간 협의·조정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사무처 기능 및 시사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수행기능은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 분야는 행정적 자주권 제고와 관련된 내용,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규제자유화 및 핵심산업의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원위사무처의 수행기능은 크게 3개 부문인데, 총괄기획부문에서는 제주특별도조직체계 및 운영, 성과관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분권 재정부문에서는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행정정책 인센티브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산업진흥부문에서는 규제자유화 산업진흥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현행 지원위원회의 경우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법령이 정한 역할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심의기구이며, 실제 지원위원회를 보좌하는 실무기구는 지원위원회 사무처가 그 기능알 담당한다.

1) 조직규모

조직구조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지원위 사무처의 경우 출범당시 3국 6과 23명으로 시작하였으나, '09년(12월 29일) 절반수준인 1국 3과 13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이후에는 인원수에 있어서만 소폭 변화되어 현재 정원은 10명에 불과하다.

구분	출범당시(3국 6과 23명)	현행(1국 3과 10명)
기구	- 3국(총괄기획관, 분권재정관, 산업진흥관)	- 1국(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 6과(영어교육도시, 총괄성과, 자치분권, 재정분권, 프로젝트1, 프로젝트2)	- 3과(총괄기획, 분권재정, 산업진흥)
정원	- 고위공무원 4명(사무처장1, 국장3)	- 고위공무원 1명
	- 과장급 6명	- 과장급 3명
	- 사무관 13명	- 사무관 6명

조직규모가 출범당시에 비해 축소된 이유는 업무 특성의 변화와 더불어 특별자치도 지원기능에 있어 능동적·선도적인 제도개선 및 조정역할 보다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업무처리방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별자치도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특성의 변화로 조직규모가 축소되었지만, 특별자치도의 기획, 평가, 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직급과 정원등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기능과 역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위위원회의 역할 및 지원위 사무처의 관련 지원업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위원회 및 사무처의 위상과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예들 들면, 법인세 인하 특례, 전지역 면세화 및 면세특구 지정 확대, 관광객 카지노 허가권 이양, 신공항 조기건설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제외하고 일방적인 이양이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또한 이양에 따른 인력/예산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사무처 기능의 초점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신규 권한이양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권한이양에 대한 효과분석, 관련조치의 타당성, 제도개선 후 후속조치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권한이양의 경우 실적(건수)보다는 기능이양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등의 후속조치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기능이양에 대하여 총리실 차원의 적정 예산, 인력 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활동 등이 요구된다.

또한 제도개선 과정에 부처간 정책조정을 현재 국장급 1명인 조직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원활한 조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사무처 신규 기능으로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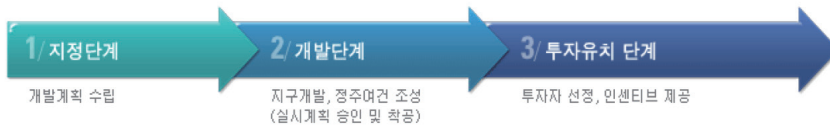
2)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보고서(2012)에 따르면, 현재 부처간 정책조정 등은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지원위 사무처의 경우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양에 대한 사후적 조치에 관여하는 것은 기능체계상 어렵다는 의견 역시 함께 제시되는 있는 바, 현재 지원위 사무처의 역할상 기능이양에 대한 후속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개별 중앙부처간 협의업무라는 점에서 지원위 사무처의 신규기능으로 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Ⅲ.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국내사례(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지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제자유구역기획단)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는 개발·외자유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5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전담행정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지정 - 개발 - 투자유치]의 순서로 진행된다.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25조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소관사항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에서 추진하며, 새만금 지역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별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시·도지사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³⁾, 시·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행정기관형태로 4개본부, 16개과, 1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도(비즈니스 IT·BT), 영종(물류, 관광), 청라(금융, 레저)지역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법은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

2. 외국사례⁴⁾

1) 오키나와 개발기구

1972년 미국으로부터의 오키나와반환(미국으로부터의)에 따라, 오키나와의 진흥개발계획을 관할하기 위한 소관관청으로서 오키나와개발청이 설치되었다.

오키나와개발청은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종합개발기구로서, 최초 설치시 기존의 홋카이도개발청과 달리 구총리부에 소속되었는데, 이는 오키나와가 단순히 개발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관련 조정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수상관할하에 조정업무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72년 개발전담기구로서 오키나와개발청이 구 총리부에 설치되었으며, 2001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오키나와개발청은 내각부내 오키나와담당부국으로 개편되었다.

오키나와개발의 운영체계는 오키나와내각부내 오키나와개발진흥국을 중심으로 진흥개발에 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행하는 ‘오키나와진흥심의회’, 오키나와현지에 설치된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인 ‘오키나와총합사무국’, 관련 중앙부처, 그리고 오키나와 시정촌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이후 오키나와개발의 성과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사회자본면에서 본토와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또 지역성장의 기반인 관광과 정보통신 분야산업이 발전되어 왔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키나와개발업무는 오키나와개발청이 설립된 1972년 이래 개발의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3차계획까지는 주로 본토와의 격차시정에 초점을 두고 진흥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나, 후반기인 2002년 이후에는 진흥계획에 대한 기본컨셉의 대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2007년 ‘오키나와진흥후기계획’은 민간주도의 자립형 경제구축에 초점을 두고 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명확화(주요 진흥책으로는 ‘새로운 IT거점이 될 오키나와 IT진양파크’, ‘오키나와의 독특한 문화를 살리는 관광진흥’, ‘사회경제발전을 지탱하는 나패공항’ 등)와 성과지표를 통한 아웃컴의 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4) 외국의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2012)을 참조하여 정리함.

2) 웨일즈개발기구(구 Welsh Development Agency : WDA)

웨일즈는 영국의 역사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낙후지역이었으며 주변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특히 70년대 탄광 및 청강산업이 몰락하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웨일즈 등 낙후지역에 지역개발청(RDA)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웨일즈개발청은 1976년에 개청되어, 지역경제발전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웨일즈 산업경제정책의 중심이 기업유치와 창업활성화에 맞추어지면서 웨일즈 개발청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웨일즈개발청은 웨일즈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할 목적으로 영국정부가 설립한 지역개발기구(RDA)로서, 재정의 대부분을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출범하였고, 웨일즈개발청은 기업유치 및 지원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업무운영시스템 외에 팀웨일즈(Team Wales)라는 협업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내 입지한 공장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관련 요구증가, 새로운 교육훈련과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 제기, 중소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비찬,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원하는데 있어 재정역량의 점진적 감소 등의 한계극복을 위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웨일즈개발청의 정책은 설립초기의 기반조성 관련업무에서 벗어나 확장·전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의 방향은 첫째,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전략에서 무형적이고 정보적인 부문(soft infostructure)에서의 지원으로 개편하여 상황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셋째는 유치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마지막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웨일즈의 투자환경 홍보 및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세계 주요도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등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3. 시사점

경제자유구역은 2004년 관련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출범초기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추진기획단이 설치되어 강력한 추진동력이 되었으나 현재 지정구역이 늘어나고 전담부서가 바뀌면서 추진 체계에 대한 개선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의 기획단,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역전담기구이외에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가 별도 설치되어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중앙 및 지역차원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본과 영국의 두가지 사례 모두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오키나와개발기구, 그리고 구웨일즈개발청 모두 국가시책으로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역개발정책 추진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일본정부 조직개편시 홋카이도개발청은 국토교통성내에 ‘홋카이도 국’으로 재편되었으나 중앙정부 ‘국’ 단위 조직으로, 그리고 오키나와개발청 역시 내각부내 오키나와진흥국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주도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웨일즈개발청은 낙후된 웨일즈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초 연방정부가 설립한 기구였으나 지역개발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내세운 주 정부의 요구로 지방정부조직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지위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의 종합적 계획 및 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IV. 향후 개선방향과 과제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내부적 자치역량의 제고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담보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행·재정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근거인 특별법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고⁵⁾,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상이 점차 약해지면서 특별자치도의 추진 동력은 점차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주체는 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 JDC 등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실천되기에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소통의 통로인 지원위

5)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행정분야는 행정안전부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법률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법추진은 상당한 한계가 존재함.

원회 및 사무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상당한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지역 입장에서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위상을 강화하거나, 국회의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변경하거나,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추진조직을 새로이 신설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추진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그 동력의 불씨를 키워나가며 지원의 당위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판단되며 두 가지 차원에서 개선방향을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중앙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통한 지원위원회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상을 현재보다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제주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발전 및 이익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현재보다 현격히 향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정치·정책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적·차등적 분권정책은 여전히 실효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이며,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유형으로 규정된 것 역시 타지방단체와의 차별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지역차원의 형평성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공식적 추진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총리실 산하의 추진위원회가 설치된 예를 보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의 당위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통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진체계 재설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감안하면 제주가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의 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위원회의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를 통한 부처간 조정기능 위주로 역할이 집중되어 수동적이고 형식적 논의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될 수 있는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필요성과 타지방과의 형평성을 극복하고 적시적인 정책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추진의지를 엿보일 수 있는 지원체제로 전환되어 그 기

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시스템과 조직체계는 국가차원의 선도적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없기에 국가정책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정치적 협상을 꾸준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사무처 기능체계 개선과 조직규모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사무처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필요 기능을 분석하여 기능 재설정 및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사무처의 기능과 관련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수행하는데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정의 부처간 업무조정 및 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강화가 필요한 기능으로 특히 부처간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진단기능, 부처간 조정기능,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평가기능, 사후조치에 관련된 기능 등이며,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국 단위의 조직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급·직제, 정원, 담당업무의 재조정 및 인력/예산의 확충을 통해 기능체계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부처간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 진단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나 JDC에서 제도개선안이 요구되면, 현재 지원위원회 사무처 각 부서내 담당 공무원(해당 중앙부처 파견)의 검토과정을 거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즉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내부에 전문가 영입 또는 정책협의회 형태를 통한 외부 전문가 워크샵 개최 등) 공동의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처와 협의·조정하는 역할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기능이양관련 업무의 경우 이양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계획 이외 개별적 후속조치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해당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원위 사무처간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상호역할 및 수행범위 등에대한 인식의 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 무엇보다도 상호간 역할의 이해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된다. **JDI**